

OECD/NAFTA

제12주

OECD

1. 정의

- 경제협력개발기구.
- 제2차 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따라 1948년 결정된 유럽경제협력기구(OEEC)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발족.

2. 특징

- 설립 당시 18개 유럽 국가와 미국, 캐나다 등 20개국이 참여
- 그 후 일본과 호주 최근에는 멕시코, 폴란드 등 8개국이 가입,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이 됨. (현재 33개국)
- 회원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18%에 불과/ GNP는 전세계의 85%, 수출입액은 70% 이상을 차지, 1인당 GNP는 평균 2만 달러.
- 1960년대 비관세장벽 철폐 및 반덤핑 과세 인정,
-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, 서비스·금융 부문 자유화 등의 개념을 주창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국제규약 제정을 선도.

OECD의 역할 1/2

가. OECD설립목적

-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한 경제·사회의 공동 발전
- OECD규약(제1조)상 목적
 - ①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
 - ②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
 - ③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정부간 협력기구
 - ④ 다자주의와 비 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

나. OECD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

- GATT/WTO, IMF, 세계은행, G7 등과 함께 시장경제 창달에 선도적 역할
 - ① 시장경제의 전세계적 확산
 - ② 사회주의의 붕괴, 냉전의 해소 및 경제안정과 무역 확대에 기여
- 80년대 이후는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중추적 역할
- 90년대에는 비 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비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활발히 전개

다. OECD 영향력의 배경

○ 주요 선진국가 모임

- ① 유럽, 북미, 아.태지역 등 세계 3대 경제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
- ② OECD 회원국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80%, 교역량의 75% 점유

○ 대화를 통한 최적 정책 제시와 자발적 이행압력

- ① 정책대화(policy dialogue) : 공통 관심사 파악, 대응방안의 도출과 이행을 위해 회원국간 **경험과 의견의 교환을 통한 결론 도출**
- ② 동료압력(peer pressure) 행사 : 합의로 도출된 정책지침, 정책권고 등에 입각하여 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상호 검토하여 정책개선·조정을 유도

○ 학제적 정책 분석 기능 : 선진 회원국이 새로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하는 선도자(pathfinder) 역할 수행 :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 정책 분석 능력 보유

○ 비회원국과의 대화 : 비회원국 협력사업으로 비회원국 시장경제개혁 촉진

○ 시민사회와의 교류 : 회원국 내의 기업, 노동조합, 환경단체 등 주요 국제 NGO들과 정책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

선진국들의 사교클럽

- 선진국의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OECD는 선진국이 총 집합하여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 경제기구.
- 회원국은 33개로,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만이 회원국.
- OECD는 회원국간 개방된 시장경제,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
- OECD의 주요 역할은 회원국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.
 - 회원국간 제도와 정책을 상호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잘 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. 이를 동료압력이라고 부름.
- 이사회를 중심으로 산하에 경제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 협력기구로 국제에너지기구(IEA), 원자력기구(NEA) 등이 있음.

OECD의 성격

1. 전반적 국제경제 협의체

- WTO/IMF : 무역, 통화, 환경 등의 제한된 분야를 대상
- OECD : 개발원조, 무역, 금융, 투자, 경쟁, 에너지, 고용, 교육, 소비자보호, 경제, 사회, 복지 등 포괄적 분야를 대상

2. 엄격한 회원 자격(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가입)

- WTO : 세계 모든 국가 가입가능(양허 수준 합의만 통과하면 됨)
- OECD : 3대 가치관의 공유: 개방된 시장경제,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

3. 클럽형태의 국제기구

- 강제적 규범 없음, 경제정책의 비교 및 검토, 상호의견 교환, OECD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**전체 합의**에 의해서만 채택되며,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없음

4. 정책 카르텔의 역할

- 거시 및 미시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수집을 쉽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협의,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

OECD의 조직

1. 이사회(Council) : 최고 의사결정기구

- 각료급 이사회(MCM):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
- 상주대표이사회: OECD상주 각 회원국대사들이 참석 월2회 이상 개최
- 집행위원회 : 이사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이사회 위임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월 1~2회 개최
- 특별집행위원회 : 각료급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해 연 2회 개최
- 기타 예산위원회, 연금위원회, 홍보위원회, 비회원국 협력위원회, 국제 NGO연락위원회, 개발센터자문이사회 등이 이사회 직속기구로 기능

2. 분야별 위원회 - 정책대화기구

- 총 26개의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 : 회원국 정책당국자들간 연 2~3회 정기적으로 해당부문의 동향 분/사업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대화를 실시
- 개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**작업반**이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

3. 반독립적 부속기구(Affiliated Body)

-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,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
- 가입은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짐. 단, 기구의 장(長)은 OECD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OECD 이사회가 지명
- 원자력기구(NEA): 원자력 안전대책 연구/추진/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* 58년 설립, 한국 93년 가입
- 국제에너지기구(IEA):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설립/주요 에너지 소비국들로 구성/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* 74년 설립, 한국 2002년 가입
- 개발센터(DC): 경제개발과 경제운영에 관한 OECD 회원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한 개발관련 정책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작업을 실시 * 62년 설립, 한국 91년 가입
- 교육연구혁신센터(CERI) : 장기적 교육혁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/ 67년 설립, OECD 전 회원국 및 EC 참가
- 유럽교통장관회의(ECMT) : 교통관련 현안 및 범유럽 수송체계의 개선과 합리적 발전방안 논의/유럽지역 교통담당장관들의 모임 * 53년 설립, 한국 2000년에 준회원으로서 가입
-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 : 아프리카 사헬 한발지역 국가들 원조 방안 협의

4. 민간자문기구

- OECD의 이사회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는 국제 NGO/사무총장 주재하에 이들 각 기구와 연 1회 정규업무협의 실시
- 노동조합자문위원회(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, TUAC): 회원국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자문기구/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들을 상대로 노조측 입장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
- 기업산업자문회의(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, BIAC): 회원국 내 산업 및 고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자문기구/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

5. 각 회원국 상주대표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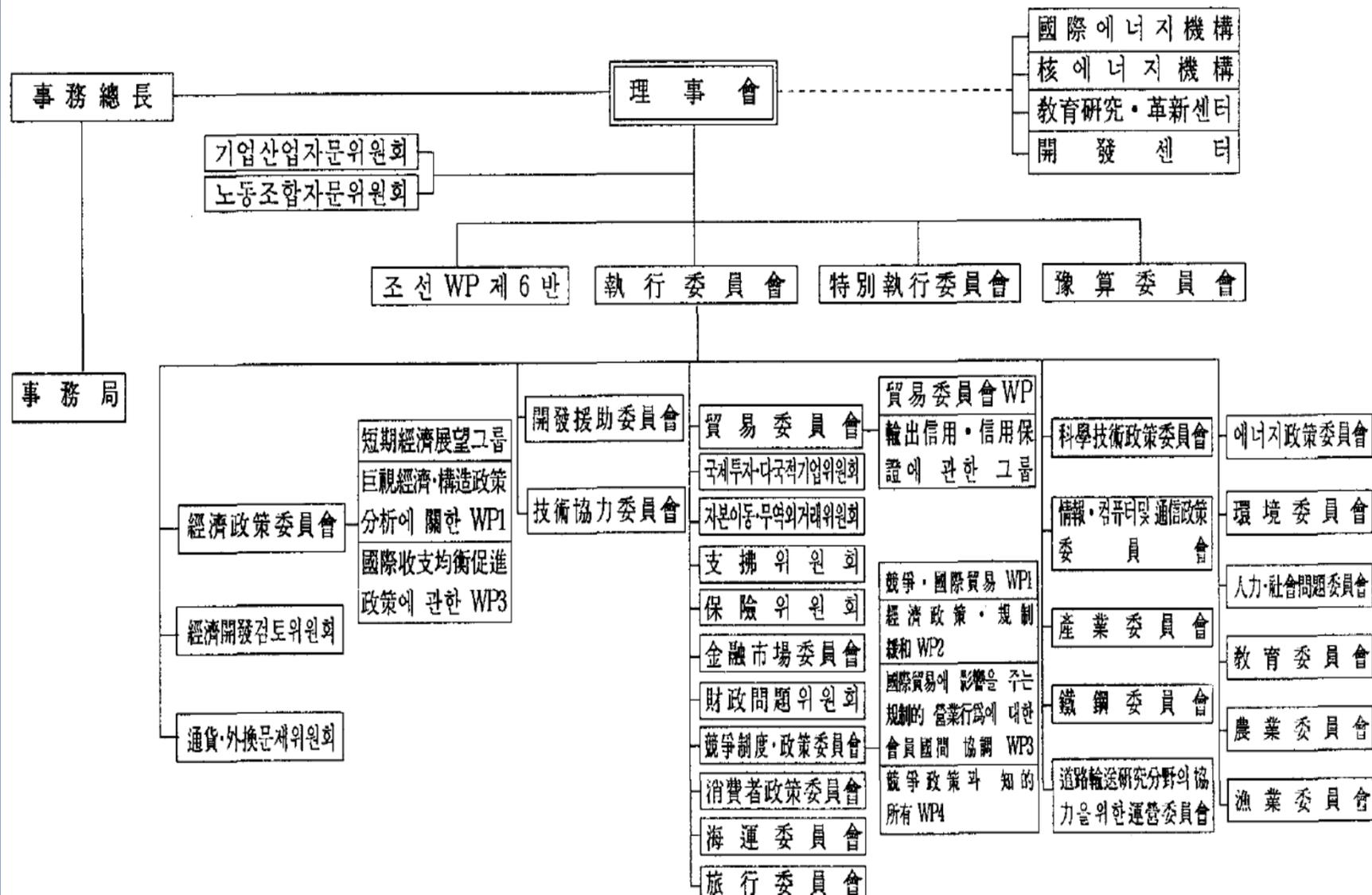
- OECD와 본국정부간의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동시에 정부대표로 OECD 운영협의 혹은 정책대화에 참여
- 각국 상주대표부의 장은 상주대표로 불리며 대사의 직급을 부여 받음.

■ 6. 사무국

-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, 전문적으로 지원
- 사무총장 1인이 2인의 사무차장 보좌를 받아 사무국을 지휘, 감독
 - 사무차장(2인)
- 사무국은 이사회사무국, 법률국, 홍보국, 비회원국협력센터 등 이사회 및 직속기구를 보좌하는 일반사무국, 분야별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11개의 지원국과 OECD 직원 인사, 통역지원 등을 위한 행정총국 등으로 구성되며, 약 2,300여명의 직원이 근무

<表 II-1>

OECD의 主要 機構 組織表



OECD 규범

- OECD 규범의 종류
- 결정(decision) : 모든 가맹국을 구속하여 회원국의 이행의무가 있는 규범
- 권고(recommendation) : 회원국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국에 이행의 고려대상으로 제공되는 비구속적 규범
 - 선언(declaration) 및 각종 약정 및 지침(arrangement and guideline) 등
- OECD 규범의 성격
- OECD 설립협약/OECD와 회원국간의 특권면제 조약은 조약과 동일한 성격
- 그러나 여타 OECD 규범은 조약보다는 강제성이 느슨, 선언적 규범보다는 강한 중간적 성격/유일한 구속규범인 결정도 회원국이 국내법상 절차를 구비한 경우에만 구속력 발생
- 신사도(gentleman ship)를 중시하는 자율적 준수원칙
 - 강제적 이행수단은 부재
- 정기적인 국별 검토 및 주요 신규조치에 대한 통고의무 등 절차상의 의무를 통한 간접적인 이행수단을 활용
 - 이행의무가 있는 결정 규범에 대한 이행상황의 감시
 - 이행의무가 없는 규범(권고, 선언 등)에 대해서는 동료압력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구속성 없음

가입조건(의무사항)

1. 일반적 의무사항

- OECD 목적의 지지 : OECD 설립목적(회원국 경제성장, 세계경제발전 기여, 개도국 원조, 자유무역확대)을 지지할 것
- OECD 제 규정의 수락 : OECD 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
- 분담금 납부
 - OECD의 예산 구분
 - Part I :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
 - Part II :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
 - 연금예산 : 퇴직사무국직원들 연금 재정을 위한 예산
 - 특정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해 조성되는 예산(비정규예산)
 - 회원국 별 분담률 산정원칙 : 최근 3년간 GDP 평균을 토대로 한 과세소득의 개념에 입각해 산정, 개별회원국 분담률에 24.975%의 상한선(미국 해당)과 0.1%의 하한선(룩셈부르크, 아이슬란드, 슬로바키아 해당)을 설정
 - 분담액 : 2006년 총예산의 규모는 339.7백만 유로(한국은 7.05백만 유로 부담)
 - ※ 한국은 2006년 Part I 승인예산 기준으로 예산분담률이 2.277%(9위)
 - 정규예산외 2006년도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은 1만유로(8월 4일 현재)

2. 권고적 의무사항

- GATT 11조국, IMF 8조국으로 이행 : 무역에 대해 관세, 조세, 과징금 이외의 쿼터제, 허가제 등의 무역제한조치 사용 금지
-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(ODA) : 원칙적으로 자국 GNP의 0.7% 이상, but 엄격히 준수되고 있지는 않음
- 자유화 의무 : 경상거래는 물론 경상 외 거래(서비스 등),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적극 참여

OEDC 가입의 효과

1. 긍정적 효과

-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
- 선진국의 주요 정책 수행에 관여 축적한 경험 및 정보 전수 기회
- 다른 회원국의 정책 및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
- 세계경제의 현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 반영
-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대우 격상

2. 부정적 효과

- 개방부담으로 해당 산업 위협
- 보고의무로 인한 경제정책 효율성 저하, 통상압력 가중
- 개도국 특혜 포기, 분담금 및 원조 및 기술이전의무 부담

NAFTA 제12주

NAFTA

- 북미 자유 무역 협정(NAFTA: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
- 북미 지역의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결성된 경제블록/ 캐나다의 자원, 미국의 자본,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된 자유 무역 지대.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

① 협정의 목적

- 무역장벽의 제거
- 공정한 경쟁조건의 보장
- 투자기회의 증진
- 지적재산권 보호
- 협정의 이행.적용 및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
- 3국간 협력 및 지역.다자간 협력증진을 위한 구조 구축

② 3국은 GATT 및 여타 국제협정상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향유

- ③ 해석상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여타 협정의 규정과 충돌할 경우, 국제환경관련 협정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협정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

각국의 추진배경

국별	추진배경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EC통합, 일본 경제권 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 재고 · 일본, 유럽 제품에 밀리고 있는 美산업 경쟁력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멕시코 저임, 캐나다 자원, 미 기술 및 자본의 결합으로 국제 경쟁력 회복 · 미, 멕 국경지역 개발촉진, 멕시코 불법이민 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남부 국경지역의 사회 간접시설 개발촉진과 멕시코 경제의 활성화로 멕시코인의 불법 이민 감소 유도 · 멕시코 경제성장에 따른 對 멕시코 시장진출 기회 확대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 미,캐 자유무역 협정 기득권 최대 유지 및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 견제 · 캐나다 상품, 서비스, 자본의 멕시코 시장진출 기회 확대 · 미, 멕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미국자본의 일방적인 對멕시코 유입우려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도 경제 성장 추진을 위해 미,캐나다의 기술 및 자본유치 · 미국,캐나다 시장접근 기회 확대로 경제 성장 가속화와 정치적 안정 기대 · 해외 투자유치 기반 마련으로 자국 산업발전 및 외채문제 해결

NAFTA의 주요 내용

① 관세철폐

-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

② 비관세장벽

- ‘쿼터’, 수입허가제 등 수입제한조치는 철폐하는 것을 원칙/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을 인정/ 농산물, 섬유 및 의류, 자동차는 특별규정 적용.
- 농산물 : 협정 발효 즉시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/관세로 대체. 알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할당관세제도 운용
- 섬유 및 의류 :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던 다자간섬유협정(MFA)에 의한 쿼터를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즉시 철폐
- 자동차 : 승용차, 트럭, 버스, 자동차 부품의 모든 교역장벽을 제거/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장벽 제거

③ 원산지 규정(rules of origin)

-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. 그러나 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자동차, 섬유 및 의류, 컬러TV,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설정.

④ 서비스교역규정

- ‘미국-캐나다 자유무역협정’과 UR협정을 확대 적용하고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보장/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멕시코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데 있음

⑤ 직접투자

- 모든 형태의 역내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,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비율의 현지부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일정비율을 수출하게 하는 등 투자의 선행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.
- 투자와 관련된 환경규정을 별도로 두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재의 환경규정의 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투자자들은 투자대상국이 내국민대우에 따라 요구하는 환경보호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도록 규정.
-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제 대상이었던 자동차 부품, 회계, 농업, 석유화학, 보험 등 금융서비스, 건설 부문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도록 함.

⑥ 기타 주요 내용

- 지적재산권 :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을 베를린 협약 및 파리협약 등 국제수준으로 규정. 회원국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집행 요건을 규정
-
- 정부조달 : 멕시코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규정/건축서비스 650만 달러 이상/국영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 25만 달러 이상/건축서비스 800만 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대해 역내국의 입찰 참여를 허용.
- 분쟁해결절차 : 역내국 간에 분쟁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와 패널 등을 설치.
- 보완협정 : NAFTA 협상이 타결된 후 각 나라가 국내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추진된 것/멕시코의 노동 및 환경 법규를 강화시킨 것/노동협력위원회와 환경협력위원회의 구성.